# 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[대법원 2015. 10. 29. 2015도5545]

## 【판시사항】

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### 【참조조문】

형법 제268조

#### 【참조판례】

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7030 판결(공2009하, 1051),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1448 판결

### [전문]

【피고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

【원심판결】부산지법 2015. 4. 3. 선고 2014노4478 판결

#### 【주문】

1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

# 【이유】

- 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- 1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는 '피고인은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,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한 (등록번호 생략) 리치스태커(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)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, 위 작업을 의뢰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 교체 작업을 하던중 타이어를 장착·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휠 림(wheel rim)이 파손되어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, 그 결과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.

'라는 것이다.

원심은,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작업 당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,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,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.

- 2.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.
- 가.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·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·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(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).
  - 나.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.
- ①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, (등록번호 생략) 리치스태커(이하 '이 사건 기계'라고 한다)를 창원시에 소재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해주었는데, 이 사건 기계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, 2013. 6. 17.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수리를 지시하였다.
- ② 공소외 4는 중장비 수리업체인 ○○○○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볼트 교체 작업(이하 '이 사건 작업'이라고 한다)을 의뢰하였다.
-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함께 같은 날 18:00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내 컨테이너 상·하차 작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착수하였는데, 이 사건 기계는 무게가 약 45톤, 타이어 하나의 무게가 약 500킬로그램, 공기압이 약 150psi(pound per squre inch, 압력 단위)에 달하기 때문에, 바퀴의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를 분리할 경우 타이어가 압력으로 튕겨져 작업자 쪽으로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.
- ④ 이는 중장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 전문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해당하고, 피해자 공소외 1은 중장비 수리를 수 년 동안 해 온 전문수리업자로서 이 사건 작업 전에도 같은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
- ⑤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기계의 타이어 공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, 같은 날 18:20경 압축 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을 당하여 옆에 있던 공소외 4와 함께 사망하였다.
- ⑥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, 공소외 4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자료가 없다.

다.

- 사정이 이러하다면,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게 된 것이고, 그 수리는 수급인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,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물론 공소외 4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구체적으로 지시·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.
-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.
-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4가 현장에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있었고,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.
  -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있다.

- 3.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은 파기하여야 한다.
  -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.
- 4.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용덕(재판장) 박보영 김신(주심) 권순일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